



Web Contents



2024년 04월 29일 16시 49분

코로나19 4급 하향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(대응지침 제14판 게시, 정오표포함)

2023.08.31 조회수 180 등록자 이유진

코로나19 4급 하향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 14판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확인 부탁드립니다.

1.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단

- '23.6.1. 이후부터 23.8.30.까지 양성확인통지를 받고 통지일의 익일까지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이 완료된 사람 중,

아래 기준을 충족한 확진 환자는 지원 가능, 이외는 지원이 중단되므로 신청 불가

(1) 생활지원비 :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-> 정부24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
(2) 유급휴가비용 :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->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

(3) 지원신청기한 :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

2. 호흡기환자진료센터(원스톱진료센터 포함) 운영종료 ->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

3. 선별진료소 위기단계 하향(경계->주의)시까지 유지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

4. 치료제 및 예방접종 :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(먹는 치료제 처방기관, 조제기관에서 담당)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- 📄 3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4판.pdf (125 hit/ 3.33 MB)
[다운로드](#)
[미리보기](#)
- 📄 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4판 개정전후대비표.pdf (120 hit/ 1.28 MB)
[다운로드](#)
[미리보기](#)
- 📄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4판 정오표.pdf (139 hit/ 141.6 KB)
[다운로드](#)
[미리보기](#)
- 🖼️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지원체계 변경사항.PNG (104 hit/ 39.1 KB)
[다운로드](#)
[미리보기](#)

목록

이전글
목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변경 및 PC...

다음글
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(가이드라인) 안내

MokPo - Si
Web Contents

